
제2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제2장

반론보도론 게재 사례



제2장

반론보도론 게재 사례

반론보도 사례 1

2023강원조정17/18 각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지방자치단체
피신청인 매체유형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지역사회가 반대하는 군관리계획 변경을 지방자치단체가 강행하여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 보도 관련, 신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반론보도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군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관리계획안을 변경하면서 주거개발진흥지구 해제를 강행하여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고,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군의회에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는 등 부당하게 절차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건축물의 높이를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유흥시설 등의 건축이 제한됨은 물론 광역지자체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해제할 경우 ○○군의 자체 권한인 지구단위계획만 적용되어 고층 건물 건축 및 위락시설의 인허가가 군 차원에서 가능하게 되는 등 향후 해변 난개발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청이유

신청인 지자체는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군관리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의 주민 열람을 시행했으며, 공고기간 동안 34명의 주민이 난개발 우려 의견을 제출하여 주민들에게 계획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주민의견 검토 결과를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또한, 20XX년 X월 X일 군의회 의원 간담회에서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고, 변경안 열람기간 동안 접수된 주민 의견 13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의회에 설명한 후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군 의회로부터 '이견없음'으로 회신받았으며, 이와 동일하게 군계획위원회에도 주민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를 설명했다고 했다.

아울러 신청인 지자체는 주거개발진흥지구 해제 대상 지역은 2011년부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고 있는 이중규제 적용 지역으로, 개발진흥지구를 해제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군 군계획 조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건축이 불가해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위락시설은 주거개발진흥지구와 관계없이 △△리 지구단위계획상 상업지역에

한해 인허가가 가능하고, 지구단위계획상 건축 높이는 4층 이하여야 해 난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청인 지자체는 군관리계획의 변경 목적이 이중 규제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재산권 확보에 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음에도, 피신청인 언론사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여 행정 신뢰가 떨어지고 주민 혼란이 가중되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 지자체가 계획 변경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한 것일 뿐,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니라고 했다.

또한, 신청인 지자체가 주거개발진흥지구 해제 이후에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난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미 ○○군 곳곳에서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재부는 ‘군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부당하게 밟았다’는 보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독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고,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 현안을 연속 보도하면서 신청인 측의 반론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반론보도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①·② ○○군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변의 주거개발진흥지구 해제를 강행해 ‘난개발’을 부채질하고 있다. **[중략]**

□□□□□도와 ○○군 등에 따르면 ○○군은 ‘◇◇◇◇ ○○ 군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 ☆☆면 △△리 등에 지정돼 있는 개발진흥지구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군은 지난달 XX일 도시계획위원회와 군의회에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도에도 이 같은 군관리계획 변경사항을 보고했다.

[중략]

특히 현재 주거개발진흥지구로 관리 중인 △△X리 주민들은 이 같은 군의 일방적인 계획이 알려지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거개발진흥지구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유흥시설 등의 건축에 제약이 따른다. 더욱이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광역지자체의 통제를 받지만 해제 시 ○○군의 자체 권한인 지구단위계획만 적용돼 향후 해변의 난개발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X리 주민들은 올 X월과 X월 두 차례에 걸쳐 주거개발진흥지구 해제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군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추진 중이다. [후략]

③ · ④ [전략] ○○군은 ‘◇◇◇◇ 군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리 일원에 지정된 주거개발진흥지구를 해제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시키면 위락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가 군 차원에서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고층 건물도 군 차원에서 맘대로 승인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지역 개발’을 빌미로 바닷가 절경 주변에 20층 내외의 생활형 숙박시설 등 고층 건물이 들어서 아름다운 경관이 사라지게 된다. [중략]

타 시·군의 경우 난개발 억제에 정책적 무게를 두는 반면 ○○군은 오히려 외지자본의 난개발에 앞장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군 △△리 주거개발진흥지구 해제 추진 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들에서 ○○군이 ‘◇◇◇◇ ○○ 군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군의회에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리 등 주거개발진흥지구가 해제되면 위락시설에 대한 인허가나 고층 건물 승인 등이 군차원에서 이루어져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군은 “‘◇◇◇◇년 ○○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청취 및 ○○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과정에서 주민 공람 의견을 보고하는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중첩규제 해소 차원에서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주거개발진흥지구 해제를 추진 중이며, 주거개발진흥지구가 해제되더라도 도시지역인 ▽▽ 등 일대와 달리 △△리 일원은 계획관리지역일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여전히 단독주택 3층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4층 이하로 제약을 받게 되며 난개발 우려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일간신문 02면 우측 최상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활자 크기는 조정대상보도 ③ 중 []와 동일한 크기 및 글자체로 하며, 본문 활자 크기는 일간신문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들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단, 상차 처리하여 다른 기사와 구분되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은 최초 24시간 동안 초기화면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들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단,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들을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뉴스서비스에 한함)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반론보도 사례 2 2023충북조정57/58 각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회사
피신청인 매체유형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기사수정)

지방자치단체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일부 시공업체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철거 관련 규정 해석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주장은 반론보도로 게재하고, 회사명은 원기사에서 익명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군이 1급 발암물질 함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샤워장 및 간판 미설치, 안전띠 미지급, 보양을 하지 않은 슬레이트 방치, 작업 중 비계 해제 및 안전로프 미설치 등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신청이유

시공업체인 신청인은 석면안전관리법상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석면의 해체·제거 작업 시에는 샤워실 설치가 의무가 아니며, 해체된 슬레이트는 하역 후 비닐 보양(포장)을 하였고, 작업 중에는 안전비계와 함께 분진막을 설치하는 등 규정을 준수했다고 했다. 또한,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이 수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관계를 알 수 있었음에도 제보자의 주장만을 사실처럼 보도하여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었고, 관공서는 물론 지역 주민들로부터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제보 내용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조합해 최대한 사실에 부합하는 기사를 보도하고자 노력했으며, 감독기관인 ○○군에도 연락을 취하는 등 사실 확인에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이 작업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일부 기소 의견으로 △△지점 ◇◇지청에 송치한 사실이 있으므로 정정보도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중재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작업 규정 위반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입장을 반론보도로 수용하고, 원기사에서 신청인 업체명은 익명 처리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양 당사자가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 ○○군이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 제거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방기한다는 지적이다.

○○군은 관내 소재 주택과 비주택에 설치된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철거, 제거하기 위해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시공업체가 석면 철거제거 작업 규정을 위반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

이로 인해 석면 분진 발생 예방과 농경지 등에 나뉘는 슬레이트 조각 방치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X월 (주)▽▽이 시공 중인 20XX년 ○○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5권역 중 ◎◎읍 <◁로 XXX-X와 ◎◎읍 ▷>길 XXX번길 XX의 슬레이트 철거제거 작업 과정에 다수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샤워장 및 간판 미설치, 안전띠 미지급, 보양 없이 슬레이트 방치, 작업 중 아시바 해체 및 안전로프 미설치, 방진복 반 탈의 후 흡연 및 음료 섭취, 분진막 미설치, 슬레이트 발로 파손 등이 목격됐다.

이와 관련 증거를 첨부한 고발장이 지난 X월 XX일 △△지방노동청 □□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접수됐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군, 슬레이트 철거 관리감독 엉망」 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에서 일부 시공업체의 슬레이트 철거제거 작업 과정에서 샤워장 및 간판 미설치, 보양 없이 슬레이트 방치, 작업 중 안전비계 해체 및 분진막 미설치 등 다수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업체 측은 “석면안전관리법상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샤워실 설치의 제외될 수 있으며, 슬레이트는 해체한 상태에서 하역 후 비닐 보양(포장)을 완료하였고, 작업 중 안전비계와 함께 분진막을 설치했으며 고의로 슬레이트를 발로 파손한 적은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일간신문 종합(02)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활자크기는 통상의 부제목과 동일한 크기로 하며, 본문 활자 크기는 일간신문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의 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24시간 동안 초기화면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단,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포털 뉴스서비스에 한함)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기사 수정사항

<조정대상보도 본문 수정>

(수정 전) 실제로 지난 X월 (주)▽▽이 시공중인 20XX년 ○○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5권역 중 ◎◎읍 <<로 XXX-X와 ◎◎읍 >>길 XXX번길 XX의 슬레이트 철거제거 작업 과정에 다수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수정 후) 실제로 지난 X월 A업체가 시공중인 20XX년 ○○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5권역 중 ◎◎읍 내 슬레이트 철거제거 작업 과정에서 다수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반론보도 사례 3

2023광주조정41·42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일반단체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미술협회의 리베이트성 후원금 수수 의혹 보도와 관련, 신청인의 입장을 반영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양 당사자 간 형사고소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부제소 조항은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지자체 주최 미술 행사를 위탁 수행하는 지역미술협회가 작품제작 업체로부터 리베이트성 후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하면서, 해당 협회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작품 제작비를 보조금 사업에 포함하지 않았고 참가자가 개별적으로 업체에게 높은 금액을 지불하게 한 뒤 차액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작품 제작비를 높게 책정한 후 제작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타 공모전에 비해 제작비를 낮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미술대전은 조례에 따라 후원 및 찬조를 받을 수 있음에도, 기사는 자발적인 후원금을 리베이트라고 표현하고,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기술해 협회의 명예가 손상되었다며 정정보도 및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이 조례에 따라 ○○시미술대전에 후원 및 찬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나, 미술협회 총회 자료집을 살펴보면 찬조·기부금 항목이 별도 기술되어 있는 것에 반해, ○○시미술대전의 경우는 내부적으로 유용 가능한 경상비로 후원금을 명시하는 등 부적절한 회계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중재부는 이미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신청인의 입장을 반영한 반론보도를 우선 게재하되, 별도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부제소 조항은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를 권고하였고,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조례에 근거하여 ○○시에서 주최하는 가장 큰 미술 행사인 ○○미술대전이 때아닌 보조금 리베이트 의혹이 있어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시미술대전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해 온 ○○시미술대전은 보조금 6천3백만 원 및 접수비 3천3백여만 원 등 1억 원 규모의 대형 행사이다.

그러나 보조금 수행단체인 △△△△이 20XX년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백만 원의 금액을 업체로부터 후원금 형태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파문이 일 전망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논란을 피하려고 미술대전에 참여한 작품의 제작비 등을 보조금 사업에 포함하지 않고 개인별로 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리베이트성 후원금을 받은 것이다”라며 “이게 바로 보조금 사업을 핑계로 참가자에게 높은 금액을 지급하게 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아 예술인들에게 사기치는 것이 아니냐?”라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 관계자는 “일시 대규모 제작을 위해 업체를 수소문한 결과 □□ 업체가 적격이라 맡긴 것이며 후원은 자발적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2X년 기준 XX회째 내려오는 ○○시미술대전 조례 개정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시 미술대전 조례 제X조를 보면 “○○시가 주최하고 △△△△협회 ○○지부가 주관한다”라고 되어 있어 내부 감사가 있긴 하나 상위기관인 ◇◇ 또한 사업의 정산 감독에 참여하기가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

지역의 미술 관계자는 “정당한 후원금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대가성이 없어야 하는데 누가 봐도 미술대전 제작비에서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겠느냐?”라며 의혹에 대해 수궁하는 분위기를 전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20XX○○미술대전’ 보조금 사업 리베이트 의혹> 관련

본문내용: 본 신문은 조정대상보도를 통해 △△△△이 20XX년 미술대전에 참여한 작품의 제작비를 참가자 개인별로 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높은 금액으로 지급하게 하고, 업체로부터 그 차액을 리베이트성 후원금으로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은 족자 제작비용은 타 공모전 대비 높은 값으로 책정된 것이 아니고, 리베이트 성격으로 차액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으며 족자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후원한 기부금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HOTNEWS 뉴스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이 통상의 기사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되도록 한다.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단, 상자, 음영,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네이버, 다음 등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반론보도 사례 4 2023경남조정19·20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유형	단체(종교단체)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종교재단이 신도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1심에서 무죄판결 받은 사실 등을 반영한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시 소재 △△사 신도들이 △△사 스님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고 하면서, 피고소인들은 제보자 A 씨를 포함한 신도들에게 ‘천도재’, ‘원결천도재’, ‘공양비’, ‘기도비’, ‘불사금’ 등을 빙자해 수년간 막대한 돈을 편취했다고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 종교재단은 보도에 언급된 사기혐의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해내역서가 대표고소인인 A 씨의 주도하에 작성되고, 제3자가 관여하면서 실제 사실과 달리 각색, 과장되거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고소인들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천도재, 원결천도재 등의 목적이 조상들에 대한 효의 일환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종교재단 대표를 대상으로 한 추가 고소 건에 대해서도 ○○경찰서의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되었으며, A 씨 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진정도 경찰의 보완수사까지 진행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신청인 종교재단은 피신청인 언론사가 제보자 A 씨의 일방적인 입장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하면서 소속 승려들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내용 등은 반영하지 않아 신도들에게 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을 초래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신청인 측의 정리된 입장을 청취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반론보도를 게재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신청인 측 관계자들이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을 반영하여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신청인 단체는 조정대상보도 이외에 2개 매체의 기사를 대상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각 사건은 모두 조정성립(반론보도)으로 종결되어 해당 보도로 인한 피해가 모두 구제되었음

조정대상보도

[전략] 최근 △△사에 대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중략]**

이에 A씨는 관련 내용을 대자보를 통해 알리고 △△사 B씨, C씨 스님을 포함 6명을 상대로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중략]**

△△사 신도들 XX여 명의 대표 A 씨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들은 공모해 지난 20XX년 X월 XX일부터 20XX년 X월 XX일까지 고소인 A 씨에게 “전생의 원한이 많은 귀신들에 의해 평생 모은 돈 전부를 잃을 것이며, 몸도 아플 테니 모든 것을 바쳐 ‘천도재’를 지내라”, “조상들이 죄업이 너무 많아 지옥에서 하늘로 천도시켜야 한다” 등을 이유로 모 스님이 고소인 A 씨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사의 계좌로 총 XX회에 걸쳐 합계 16억여 만 원과 또 다른 고소 1명은 XX회 14억여 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분원 등 약 5곳의 분원을 신축하면서 신도들로부터 천도재, 원결천도재, 공양비, 기도비, 불사금 등을 빙자해 막대한 돈을 편취했다”며 “이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실제로 만났고 수행을 인정받아 ‘광명불’이라는 불호를 받았다며 부처님 10대 제자인 가섭존자, 자재통왕불 등으로 신격화하면서 전지전능한 초월적 존재, 지옥이나 천국으로 자유자재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신도들을 현혹시켰고, 본인들이 생불이 됐기에 가능하며 천도재 등을 지내야 조상들이 무서운 지옥에서 벗어나서 하늘세계로 보낼 수 있다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중략]**

하지만 제보자 A씨(외 1명)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피해자들을 기망해 현금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70억이라는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신도들로부터 천도재, 원결천도재, 공양비, 기도비, 불사금 등으로 막대한 돈을 편취했다”는 요지로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편 “천도재, 원결천도재, 보살인가 등 관련은 종교행위로서 직접적·핵심적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뿐,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기 어렵다”는 원심 판결에 대해 ○○지법 원심 검사는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사, 신도 상대 사기 의혹’ 보도 관련

본문내용: 본 신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사 일부 스님들이 신도들에게 보살 인가를 받도록 유인하고 천도재 등을 이유로 금품을 편취했다는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는 “위 보도 내용과 관련한 1심 판결(○○지방법원, 20XX. X. X. 선고, 20XX고합XX)에서 고소인들의 진술 내용에 대한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 스님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또한 위 판결과 유사 내용으로 제기된 국민권익위원회 진정 사건도 20XX년 X월 ○○경찰서가 무혐의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한 바 있으며, 이후 새롭게 제기된 진정사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사 측은 “△△△△ △△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 실천하는 정법교단으로서 신도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고 종교행사의 일환으로 불사비, 기도비 등의 비용을 받은 것뿐이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뉴스 초기화면 주요 기사 섹션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게재한 이후 48시간동안 고정하여 게재하며,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48시간 게재 이후에도 반론보도문이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단, 계약에 의한 기사 공급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그 경우에도 네이버, 다음 포털의 뉴스섹션에 한함)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